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5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김소희 · 김미애 · 안상훈
김선교 · 이양수 · 추경호
김상훈 · 서지영 · 김예지
이헌승 · 김은혜 · 김석기
권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 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제출) ① 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의 이행 절차 및 비용의 적정성
3.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비교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의장과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한 의원 및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규제영</u> <u>향분석서 등의 제출) ① 의원</u> <u>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u> <u>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u> <u>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u> <u>하 “규제”라 한다)의 신설 또는</u> <u>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u> <u>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u> <u>호의 사항을 분석한 국회입법</u> <u>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u> <u>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u> <u>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u> <u>야 한다.</u> <u>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u> <u>요성</u> <u>2. 규제의 이행 절차 및 비용의</u> <u>적정성</u> <u>3.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u> <u>비교</u> <u>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u> <u>사항</u> <u>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u> <u>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u>

석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를 의장과 규제영향분석을 요
구한 의원 및 해당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